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석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0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8.

발의자 : 강석진 · 함진규 · 박맹우
홍문표 · 김성찬 · 권성동
김정재 · 황주홍 · 김재원
김진태 · 박덕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수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,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식품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)”를 “(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

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
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<u>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</u>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<u>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</u>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</u> <u>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<u>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</u> <u>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 <u>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</u> <u>없다.</u></p> <p>1. <u>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</u> <u>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</u> <u>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2. <u>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</u> <u>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</u> <u>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</u> <u>한 자</u></p>